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547

발의연월일: 2025. 4. 2.

발 의 자:김동아·정을호·정진욱

이병진 • 추미애 • 윤준병

박정현 · 오세희 · 김문수

한준호 • 이수진 • 김남근

김영배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발전용, 산업용에 대한 별도의 구분 없이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하지만, 발전용 직수입자는 가스를 이용하여 상업적 경쟁을 통해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 보기 어렵고, 타사업자와 전력·가스 수급 및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별도의 규제 장치가 필요함.

한편 '25년 이후 평균요금제 대상 발전기가 순차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직수입 발전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0년 이후 발전비중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천연가스 및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발

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로 구분 규정하고(안 제2조제9호 개정, 같은 조 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 인한 전력시장 영향과 천연가스 수급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료제출의무 강화, 해외재판매 행위에 대한 승인제 도입 등 주무부처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의5제4항 개정, 제10조의6제4항 및 제54조제1항제18호 신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의2부터 제9호의6까지를 각각 제9호의4부터 제9호의8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9호의2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의2(종전의 제9호)중 ""자가소비용직수입자"란 자기가 발전용・산업용"을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란 자기가 발전용 한다.

- 9.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 "기타자가소비용직수입자"를 총칭한다.
- 9의3. "기타 자가소비용직수입자"란 자기가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제10조의5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인 천연가스 수출입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출·해외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또는 거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10조의6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제한과 제10조의5제4항의 승인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은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제10조의6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발
	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
	"기타 자가소비용직수입자"를
	<u>총칭한다.</u>
9. "자가소비용직수입자"란 자	9의2.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
<u>기가 발전용·산업용</u> 등 대통	입자"란 자기가 발전용
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소비	
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u>.</u>
<u><신 설></u>	9의3. "기타 자가소비용직수입
	자"란 자기가 산업용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소비
	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u>9의2</u> . ~ <u>9의6</u> . (생 략)	<u>9의4.</u> ~ <u>9의8</u> . (현행 제9호의2
	부터 제9호의6까지와 같음)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
인 등) ① ~ ③ (생 략)	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제3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인

· 수출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제10조의6(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① ~ ③ (생략)

<신 설>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 17. (생 략) <신 설> 천연가스 수출입업자는 천연가 스의 수출·해외처분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계약 또는 거래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약의 내용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의6(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 제한과 제10조의5제4항의 승인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가소 비용직수입자 등은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과태료) ① -----

1. ~ 17. (현행과 같음)

18. 제10조의6제4항에 따른 자 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u>한 자</u>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